NH Bank legal brief

22년도 상반기 금융회사 제재사례 정리

2022. 6. 20.

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를 요구하는 제재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. 규제대응지원반에서는 22년도 상반기 제재사례 약 60건을 분석하여 당행과 관련되는 제재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
- □ 금년도 주요 제재사례로 <u>사모펀드 환매지연, 불완전판매 관련</u> 건이 있습니다. <**주요 사례**>
- o 2022. 2. 16. **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**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, 과 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 의결(붙임자료 은행 1. 참조)¹⁾
- 금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,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
- o 2022. 3. 16. 금융위는 옵티먼스 펀드와 관련하여 판매·수탁사인 NH투자증권, 하나은 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(붙임자료 은행 3. 참조)
- NH투자증권은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,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, 과태료 51억 7280만원 부과 조치를²⁾, 하나은 행은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음.³⁾

¹⁾ 일부정지 업무내용

⁻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,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

^{*} 참고로,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 의결·통보

²⁾ 일부정지 업무 내용 - 사모펀드 신규 판매에 대한 업무

³⁾ 일부정지 업무 내용 -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

- o 2022. 4. 18.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합성 원칙, 설명확인의무,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'기관주의'와 과태료 29억 2,000만원의 제재를 받음(붙임자료 증권 3. 참조).
-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사전통보된 '기관경고'보다 한단계 낮은 경징계인 '기관주의'를 결정하였는데,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 100% 보상을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- □ 금융실명법 제3조, 제4조의2 등 위반사항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주요 사례>

- o (중소기업은행) 명의인의 내점 없이 휴대폰으로 전송한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
- ㅇ (부산은행) 대리인인 가족의 실명확인증표만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경우
- ㅇ (수협은행)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하여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등
- □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도 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.

<주요 사례>

- o (NHN페이코)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
- o (부산은행)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
- o (중소기업은행)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,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,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

□ 시사점

금감원의 제재는 대부분 불완전 판매, 실명제 위반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일선 영업점에서도 매우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. 따라서 업무수행 시 위 내용에 대한 (붙임 자료)를 참고하시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NH규제대응지원포털 (정부유권해석-금융제재사례) 자료를 참고하거나, 규제대응지원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-붙 임-

[은행 제재 사례]

순서	일자	금융기관	관련법령	제제대상사실 (*은행업 관련사항에 한정)	제재조치내용
1	2.16.	중소기업 은행 (*부문검사)	구 자본시장법 제46조, 제46 조의2, 제47조 자본시장법 제 71조, 제108조	 ▶사모편드, 특정금전신탁 불완전 판매 가)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(1)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○ 펀드, 신탁 판매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 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함. ○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 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美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투자되는 특성상 대출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점 등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 정보 등 중요사항(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상 구조와실제 투자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점,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,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있는 점 등)을 확인하지 아니함. (2) 영업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○ 펀드, 신탁상품의 주요내용, 주요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고(설명의무 위반), 설명한 내용에대하여 투자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함(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). 나) 적합성 원칙 위반 :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및 투자자 정보확인서 교부를 누락하거나 	[기관] 업무의 일부정지 (1월, 사모펀드업무), 과태료 47.1억원 부과 [임직원] 퇴직자 위법· 부당사항 통보 2명,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24명 등



	투자자정보확인서상 투자자성향 설문지 항목을 판매직원이 임의작성하 거나 대필기재함. 다)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: 투자자성향이 '공격투자형'이 아닌 투자자에게 '매우높은위험' 등급의 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투자자성향 및 상품위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거나, 판매직원이 임의작성 또는 대필기재함. 라)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마)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
구 자본시장법 제57조	 ▶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-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광고 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포함하고, 준법감시인 심사필 누락함.
금융실명법 제 3조 특정금융정보 법 제5조의2	 ▶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휴대폰으로 전송한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거래자의 실지 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함.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, 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함.



			자본시장법 제 103조	▶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	
			금융사지배구 조법 제7조제2 항	 ▶임원 선임·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 14명에 대하여 이를 누락함. 	[기관] 과태료 1억 6060만원 부과 [임직원] 과태료 부과 3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9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1명 과태료 부과 8명 주의 1명
			금융실명법 제 4조의2	 ▶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의무 위반 -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 공하면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제공사실을 미통보(1,366건)하거나 지연 통보(23,074건)함. 	
2	3.2.	중소기업 은행 (*종합검사)	금융실명법 제 3조, 특정금융 정보법 제5조 의2	▶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- 가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확인하고 가 족관계 확인서류,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 징구하지 아니함.	
			여신전문금융 업법 제14조, 제14조의5	▶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- 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명은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 의 모집을 위탁하거나, 신용카드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함.	
			자본시장법 제 71조	▶ 영업점의 사모편드 등 불완전 판매 -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(또는 자격증 효력정지)에 의한 투자권유 -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	



			전자금융거래 법 제21조 제2 항	 ▶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: 전산원장 변경 전후내용을 기록 보존하지 않고,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 원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. -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: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체계 변경에 대하여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및 최고경영자 보고를 누락함. -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: 서버접근통제시스템 작업이력 로그파일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함. 	
3	3.16.	하나은행	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제80조제1항 제238조제5항	▶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- 옵티머스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에 운용지시에 따른 사모사채원리금 상환액이 일부만 입금되어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한은금융망을 통해 은행자금으로 판매사와 우선 정산한후, 환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자금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매청구를받지 않은 타 펀드의 재산(예금)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마감함으로써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 ▶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 금지 위반 면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 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자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운용지시 없이 수탁한 펀드의 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킴.	[기관] 업무(사모편드 신규 수탁)의 일부정지 3월 [직원]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명



				▶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인의무 위반-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및 관련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 안건을 수령하지 않음.	
		수협은행	금융실명법 제4조의2	▶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-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지연통보,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	- [직원] 주의 3명
4	4.19.		금융실명법 제4조의3	▶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·관리 의무 위반 -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·관리	
5	5.16.	하나은행	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	 ▶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- 거주자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함에 따라 제3자 지급이 되어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. 	
			외국환거래법 제8조제6항	 ▶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- 미화 5천불 초과 외국환거래 취급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. 	[기관] 과징금 49백만원, 영업점 업무의 일부정지(4개월)
			외국환거래법 제8조제6항	▶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-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, 미화 5만불 초과 수령의 경우에는 영수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, 66,600건 중 3,500건을 보관하지 아니함.	



6	5.18.	부산은행	구 자본시장법 제46, 47조 자본시장법 제108조 구 신용정보법 제18조, 제20조의2	 ►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- 본점의 사전검토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○ 일반투자자 상대로 ABCP를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(운용자산) 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(SAFE) 등기 미완료 사실을 기재 누락한 상태로영업점에 배보함. - 영업점의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, 설명확인의무 및 불건전 영업행위금지 위반 ○ 특정금전신탁 계좌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유선통화 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자성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(적합성 원칙 위반),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의무 위반하였으며, 개인투자자에게 운용자산 설명서를 교부하지않아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. 	[기관] 기관주의, 과태료 1억 2,780만원 부과 [직원] 견책, 주의 등 9명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6명
				▶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-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관 및 삭제의무 위반-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·최신성 유지의무 위반	
			전자금융거래 법 제21조	 ▶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확보의무 위반 -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-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-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 -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	



자본시장법 제166조의2	 ▶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확인 의무 위반 등 -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의 경우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장외 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목적거래 제한의무를 위반함.
특정금융정보 법 제4조의2	▶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- 고액 현금거래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보고 누락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.
은행법 제34조	 ▶여신 심사 불철저 - 차주의 자산 및 소득정보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출금의 상환계획, 상환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 없이 대출을 승인함.
금융실명법 제3조	▶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- 특정금전신탁 계좌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유선상으로명의인의 계좌개설 의사만 확인하고 계좌 개설함.



[증 권]

순서	일자	금융기관	관련법령	제제대상사실 (*은행업 관련사항에 한정)	제재조치내용
1	1.21.	하이투자 증권	자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	 ▶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-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변제대산 수익보상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	[기관] 과태료 부과 107.5백만원 [직원] 정직 3월 1명, 퇴직자 주의 상당 1명
				▶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-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 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음.	
2		NH투자증 권	구 자본시장법 제49조제2호	 ▶부당권유 금지 위반 - 옵티머스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, 이에 대한 합리적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, 충분히 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함. 	4 7 1 1 1 T 6 1 6
	3.16.		구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	▶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- 집합투자증권의 내용, 위험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확인받지 아니함.	
			구 자본시장법 제57조제6항,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	 ▶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- 50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. 	



3	4.18.	한국투자 증권	구 자본시장법 제57조제6항, 제249조의5	 ■팝펀딩 펀드 불완전 판매 - 팝펀딩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: 적합성 원칙, 설명확인의무,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 -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■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	[기관]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(29.2억원) [임직원]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1명, 주의 1명
4	4.29.	교보증권	구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제 2호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	 ▶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겸직하게 함. ▶단독편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해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사 직원에게 펀드의집합투자증권을 판매(1억원)함. 	[기관]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(380백만원) [임직원]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 8백만원 1명, 견책 2명,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1명



[기 타]

순서	일자	금융기관	관련법령	제제대상사실 (*은행업 관련사항에 한정)	제재조치내용
1	1.26.	아시아 신탁	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형법 제355조, 356조	▶업무상 배임 - A팀장은 사채업자 B와 공모하여 B가 실질 운영하는 시행사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, 은행에 아시아신탁 명의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한 후, B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아시아신탁 명의 이 자금관리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동 예치금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잔고 증명으로 활용하고, A팀장은 채권자들이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한 546억원을 B가 지정하는 가족 계좌로 송금하여 줌.	[기관] 기관경고 [직원] -면직, 과태료 23백만원 -감봉 1월
			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	▶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통지의무 미이행	
2	1.28.	한국자산 관리공사	신용정보법 제 20조의2	▶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-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에도 삭제하지 아니함.	[기관] 과태료 2,880만원 [임원] 주의2명, 퇴직자 위법·부당 등 3명
3	2.25.	오성저축 은행	금융사지배구 조법 제29조	▶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-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 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되는데도,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함.	[기관] 기관주의, 과징금(3억 81백만원), 과태료(40백만원)
			금융사지배구 조법	▶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-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	[임원] 주의적 경고 1명, 주의 2명,



			제25조제6항	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근무성적평정요소에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,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·관리 수당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함.	과태료(2.4백만원)
			신용정보법 제19조	▶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·시행의무 위반 -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, 입력된 정보의 변경·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하여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,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함.	[직원] 주의 2명, 과태료(2.4백만원)
4	0.7	, 엔에이치 · 엔페이코	전자금융거래 법 제21조제2항	▶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-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	[기관] 과태료 부과 (2,720만원) [임직원] 주의 2명,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1명
4	3.7.		전자금융거래 법 제24조제3항	▶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-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함.	
5	4.1.	벽제농협	신용협동조합 법 제42조, 제95조	▶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- 차주에 대하여 본인, 관린자,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	



6	4.8.	웰릭스 에피앤아 이대부	신용정보법 제18조	 ▶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- 회생면책결정,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2,920건에 대해 해제사유 발생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현황정보를 해제 하지 아니함. 	[기관] 과태료 900만원 [직원] 주의 2명
7	4.27.	코람코자 산신탁	자본시장법 제108조제4호	▶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- 신탁계정대여금을 운용함에 있어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 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대여금을 조속히 상환하여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고유재산에서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(고유재산)의 이익을 도모함.	[기관] 기관주의 및 과태료(50백만원) [임직원] 주의 1명,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1명 등
8	4.29.	DGB금융 지주	금융사지배구 조법 제6조제1항	▶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- 같은 날 다른 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둘이 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	[기관] 과태료 1억 5200만원 부과 [임직원] 주의 3명
9	5.13.	경서농협	신용협동조합 법 제83조의3	▶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(LTV) 초과 취급 - 실제 분양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, 전산시스템을 수차례 재가 동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게 제시한 법인을 산정하여 감정형가를 의뢰함.	[임원] 주의 1명 [직원] 견책 1명, 주의 5명
10	5.13.	현대캐피 탈	금융사지배구 조법 제22조제3항	▶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준수 소홀 - 임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0 이상은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, 업무집행 책임자에 대하여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전액 지급함.	[직원] 주의 3명